

의안번호	2214619
의 퇴 인	문진석의원
회 답 일	2026.2.24.
추 계 번 호	25C6579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와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445억원, 2029년 340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,78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	1,445	-	-	340	-	1,785	357

주: 1) 보건복지부 기시행 사업인 “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”사업 국고보조율 준용

1.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(제1항) 7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(신설)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신설) ※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6조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	○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(50%)을 준용하여 추계함

- 동법 제16조제2항1)에 따르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추계는 현행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(50%)을 준용하여 추계함
 - 보건복지부는 2026년 ‘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’ 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전체 소요 금액의 50%인 8억 2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
 - 안 제47조의3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비용은 응급장비 구비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
- 현행 법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 등 구비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자동심장충격기만을 고려함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재정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현행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* 및 노인복지시설이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시설이 되고, 승합자동차에는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, 노인복지시설에는 설치형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
 - ※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시외버스 운송사업
 - (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합자동차) 버스 운행률(가동률)²⁾을 적용하여 전체 승합자동차의 80%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필요시 이동하여 사용하도록 함
 - 버스 운행률은 버스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서울 마을버스의 경우 약 85%, 인천 광역버스는 약 70% 수준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평균 운행률 80%를 가정하였음³⁾
 - (노인복지시설)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설치형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때 설치 대수는 현행 유치원과 전통시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참고⁴⁾
 -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설치 대상 시설 수와 시설 1곳당 설치하게 될 응급장비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2) 버스 가동률(운행률)은 버스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서울 마을버스의 경우 약 85%, 인천 광역버스는 약 70% 수준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평균 가동률 80%를 가정하였음

3) 아시아경제(2025.3.18.), “인천~서울 광역버스 '준공영제'...운행률 53→70%, 배차간격 8분 단축”, 뉴데일리(2025.8.28.), “서울시-마을버스 업계 정면충돌 ... "감독 강화" vs "환승체계 탈퇴”

4)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신고 시스템(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) 분류 결과에 따르면,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유치원 1개소 당 평균 1.08대, 전통시장은 평균 1.2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(2023.12월 기준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신규 설치 AED 수) 개정안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와 노인복지시설 당 설치할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곱하여 산출
 - (설치 시설 수) 2024년 12월 기준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는 49,465대의 80%인 39,572대,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96,430개소⁵⁾에 각각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
 - 구비 대상 시설 수는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
 - (시설 당 필요 AED 개수) 시설 당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승합자동차와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자율설치 시설이므로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음⁶⁾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현황 및 신규 설치 대수
(단위: 개, 대)

구분	전체 개소수 (A)	시설 당 AED 개수 (B)	필요 AED 개수 (C=AxB)
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합자동차 (이동용)	49,465	1	39,572
	39,572(80%)		
노인복지시설 (설치용)	96,430	1	96,430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

- (구비 단가) 조달청 나라장터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이동용 자동심장충격기 170만원, 설치용 자동심장충격기 230만원,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5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⁷⁾
 -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5) 2025년 6월 발표

6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합자동차에는 2025년 말 기준 2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노인복지시설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

7) 자동심장충격기는 업체와 모델마다 가격이 상이하나, 본 추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200~240만원(보관함 포함)인 점과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50만원인 점을 고려함

- 추계 결과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445억원, 2029년 340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,78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연도 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총 재정소요(A)	2,891	—	—	680	—	3,571	714
국고보조율(B) ¹⁾	50%						
추가재정소요(A×B)	1,445	—	—	340	—	1,785	357

주: 1) 보건복지부 기시행 사업인 “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”사업 국고보조율 준용

1.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